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6
--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3월 19일  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### 1. 제안이유

- 다양화된 행정업무에 대해 소관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한 자문위원을 증원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자문위원 증원

- 전문가 위촉인원 범위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조정  
(안 제12조의2제1항)

#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# 5. 관계법령발췌 : 별첨

####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 중 “2인”을 “3인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<u>2인</u>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 ①.....  .....  .....  .....  ..... 3인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54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